



배 상 호 과장
(농림부 가축위생과)

수의·축산인과 100만 양축농가의 숙원과제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 정부에 이송되어 개정법률안이 법률제5443호('97. 12. 13)로 공포되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공포되면 6월후인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훈령 등 세부지침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동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의의와 필요성 및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의 의의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의의는 종전의 가축사육과 도축은 농림부가, 가공·판매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등 축산물관리 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제도확립 측면에서 선진입국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공급으로 수입자유화 등 WTO체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142종의 가축전염병중 약 70%가 탄저병, 우결핵, 살모넬라, 대장균 O-157 : H7, 기생충 등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이 전염병이 축산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축산물의 특성상 전문가에 의하여 단계별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가축방역과 도축장 위생검사를 연계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인체감염예방은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물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인체위해 방지는 물론,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원활히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2.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추진경위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94. 6월에 생산자의 가공산업 참여로 농가소득증대와 축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

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축협이 전조합 장일동과 서울시·충남도에서는 '95. 2월 행정쇄신위원회와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에 축산식품의 농림부 일원화를 건의하였으며, '96. 2월에는 소비자단체(9개)와 생산자농민단체(28개)가 연대하여 건의한 결과 행정쇄신위원회는 '95. 3월에 이 건의를 정식과제로 채택하여 2년간에 걸쳐 관련기관과 33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농림부 및 행쇄위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96. 4월 실무위원회(재경원, 내무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인 등 15명 구성)의 의견을 거쳐 '97. 2. 28 전체회의(12인구성)에서 본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

이어서 행쇄위는 의결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97. 4. 7일자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법(축산물위생처리법, 식품위생법)을 '97년내에 개정토록 지시하였다.

농림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97. 5. 28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유보되었으며, 7. 14에는 경제장관회의에 다시 상정하였으나 역시 유보된 바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정부안으로서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 236명은 당시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 등 155명의 의원소개로 국회에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입법청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입법청원절차에 따라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기초성안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97. 11. 10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

축산물은 일반농산물이나 식품과 달리 가축으로부터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탄저병, 수

결핵, 부루세라병, 대장균 O157 : H7, 살모넬라증, 레스테리아

등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등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야한다.

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중 제4조 제2항의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것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수정하고, 제19조 제1항의 「작업장, 축산물 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의 협의를 거쳐 '97. 11. 17 통과 시켰다.

'97. 11.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개정법률안은 이우재의원의 제안설명(유인물로 대체)으로 상정되어 김홍신·채영석·정의화 의원의 반대 토론과 정일영, 이우재의원의 찬성토론후 기립표결을 실시한 결과, 표결결과 재적의원 158명중 찬성 91표, 반대 22표로 개정법률안은 통과하였으며 이로써 '85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던 축산물 가공관리업무가 12년만에 소비자 및 생산자의 요구에 따라 농림부로 환원하게 되었다.

3.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산물은 일반농산물이나 식품과 달리 가축으로부터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탄저병, 우결핵, 부루세라병, 대장균 O157 : H7, 살모넬라증, 레스테리아 등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식중독균의 일종인 그 유명한 O157 : H7이 채소류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환경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곧 사멸되어 별문제가 없으나 축

산물은 그 자체가 배지 역할을 함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것이다. 축산물이 다른 식품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전문가인 수의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이 가공품에서 발견될 때에는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나를 역추적하여야 하는데 가축의 사육 단계에서부터 도축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관리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95. 2월에 인천지역에서 소내장을 섭취한 시민이 탄저병에 감염되어 2명이 사망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때 농림부에서는 당시에 도축된 소의 출하농장을 전부 조사하는 한편, 도축당시의 상황을 총 점검하였다. 그러나 탄저병의 증상이나 증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탄저병으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탄저균을 분리·동정하지 아니하고 탄저병 항체양성만으로 "확진"으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표로 소비자는 부산물섭취를 중단하였으며, 그 결과 소의 부산물가격은 급락하여 15~20만원하던 부산물가격이 2~3만원으로 거래되어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수십 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지난 '96. 8월에 쇠고기에서 O157 : H7을 발견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약 9,000여중에 달하는 대장균중 O157 : H7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12종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Verotoxin 확인시험을 거쳐야만 확진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성급히 발표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축산물 섭취를 거부하였던 것은 전문조직에 의한 관리부재로 축산식품관리업무가 2원화되었기 때문인 것은 자명하다고 하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시행에도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보관·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겠다.

또한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을 연계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축산식품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일원화는 필요한 것이다.

도축장(도계장)에 출하된 가축을 도살·해체하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실험실 진단을 병행함과 동시에 출하된 농장을 역추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물론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는 필요한 것이다.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시행에도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보관·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산지생축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여도 소비자 가격 즉 정육점에서의 축산물가격은 내리지 않아 소비자를 골탕먹이고 있는 이유도 축산식품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95. 12월에 소산지가격은 500kg기준 323만원이었으나 '97. 10월에는 25%하락한 243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쇠고기값은 500g 기준 8,150원에서 10%하락한 7,320원을 받는 것은 산지 소값과 쇠고기 가격을 연계하지 않아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일원화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산지 소값과 연동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의 부속협정서인 SPS(동식물위생협정)협정에 의거 국내산과 수입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차별 없는 동등성 유지와 동물·축산물의 검역강화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식품의 관리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는 정부 수의사가 서명한 검역증명서에 의하여 교역하고 있는 것은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의조직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축산물의 위생검사를 동일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를 국내산과 수입축산물과 차별없이 검사토록 국제규정에 명시된 바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다.

축산물가공산업과 축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도 축산식품관리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농림부는 종전의 축산물가공업무가 보건복지부소관일 때에도 축산물가공·유통·판매사업에도 '91~'96년까지 총 4,586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였으며, 축산물의 품질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축(집유)과 가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150억원 시설 규모의 축산물종합처리장 10여개소를 건립중에 있다.

또한 한우전문판매점, 수입육전문판매점 등 판매업에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4.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내용

법의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85년 이전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하고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규정하였다.

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의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85년 이전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하고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규정하였다.

종전 수육과 원유로 한정되었던 축산물에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포함시킴으로써 축산물의 도축·처리·가공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다. 축산물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다.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방법·성분규격·위생등급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항생물질·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과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의 거쳐 정하도록 조치하였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또는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존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알 수 있게 규정하였다.

도축장등 작업장에서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과,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처리·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서 오염방지를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의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수입검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장·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축산물의 성분함량·잔류물질·미생물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검사기법의 발전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토록 규정하였다.

도축업·집유업외에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과 용기제조업 등 영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허가신고 등의 관리업무를 이 법에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이 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축산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하였다.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축업과 축산물가공업 등을 행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축산물을 압류·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벌칙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5. 후속조치계획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7. 12월부터 '98. 6월까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학계·연구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축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특별대책반(TASK FORCE)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책반의 임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축산물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물관리제도과 위생수준향상 및 가공산업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등 단계별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의 국가가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의 경우도 후생성의 유육위생과에서 수의전문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로 수리의 경우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점 관리하는 제도(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도입과 업무이관에 따른 축산물 관리·연구·검사기관의 조직·인원·장비 및 시설 등을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의과학연구소·동물검역소 및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검사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벤치마킹(Bench Marking)제도를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과 검사장비를 보완하여 검사기관간 기술능력 격차 해소 등에 주력할 것이다.

6. 결론

축산식품관리업무일원화는 농림부의 부처이기주의나 수의·축산인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하여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으로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 가축방역철저, 축산물의 생산과 수급조절, 가격 안정으로 양축농가인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한 충정어린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의 국가가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의 경우도 후생성의 유육위생과 수의전문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종전의 경우보다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를 기함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생산을 위하여 행정 및 검사공무원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들은 저희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 글을 맺는다. **養豚**